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2023년 3월 20일

양산시의회규칙 제112호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중앙정부차원의”를 “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
회가 직접 주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4호
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
국외출장을 가는 경우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
외출장을 할”을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